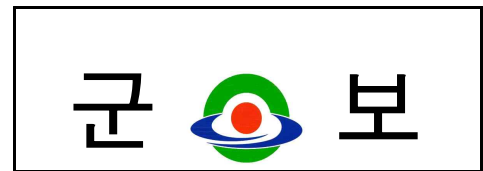


예 천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385호 2022. 8. 18.(목)

선 람	기 관 의 장

공 고

- 「용궁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제외), 「오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제외), 「상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기술제안서 제출 안내 재공고(긴급) (예천군 공고 제2022-1062호)
- 예천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예천군 공고 제2022-1089호)
- 예천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예천군 공고 제2022-1106호)

회 람									
--------	--	--	--	--	--	--	--	--	--

발 행 예천군 편찬 기획감사실(전화 650-6066)

**「용궁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제외), 「오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제외), 「상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신기술 · 특허공법 선정 기술제안서 제출 안내 재공고(긴급)**

예천군에서 시행하는 「용궁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제외), 「오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제외), 「상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교량, 배수펌프)에 적용할 신기술 · 특허공법 선정을 위하여 기술제안서 제출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2년 8월 18일

예 천 군 수

1. 사업개요

- 가. 사 업 명 : 「용궁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제외)
「오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제외)
「상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교량, 배수펌프)
- 나. 시행기관 : 경상북도 예천군 안전재난과
- 다. 사업위치 : 경북 예천군 용궁면, 은풍면, 지보면 일원
- 라. 사업기간 : 2021년 ~ 2024년

2. 공법선정 대상

- 공법선정대상은 상월지구내 배수펌프 및 교량에 한함.

가. 배수펌프

지구	그룹	시설물명	규 모	형 식	추정금액 (백만원)	비고
상월	A	상월 배수펌프장	D800mm×80m ³ /min ×H8.0m×3대 (예비1대포함)	수중사류펌프	540	VAT 포함
		만화 배수펌프장	D600mm×40m ³ /min ×H6.0m×3대 (예비1대포함)	수중축류펌프	396	"
용궁	B	향석 배수펌프장	D1,200mm×185m ³ / min×H8.5m×4대 (예비1대포함)	수중사류펌프	1,518	VAT 포함
		읍부 배수펌프장	D900mm×121m ³ / min×H4.7m×2대	수중축류펌프	291	"

나. 제진기

지구	그룹	시설물명	규 모	형 식	추정금액 (백만원)	비고
상월	A	상월 배수펌프장	W3.0m×H4.2m×3대	로타리식 자동제진기	480	VAT 포함
		만화 배수펌프장	W2.4m×H4.6m×3대	로타리식 자동제진기	420	"
용궁	B	향석 배수펌프장	W3.6m×H4.5m×4대	로타리식 자동제진기	762	VAT 포함
		읍부 배수펌프장	W2.7m×H4.2m×2대	로타리식 자동제진기	289	"

다. 교량

지구	그룹	시설물명	제원	형식	추정금액 (백만원)	비고
상월	A	구태1교	L=27.0m, B=9.0m	합성형라멘	559	VAT 포함 설치도
오류	B	오류교	L=76.5m, B=7.0m	합성형라멘	1,232	VAT 포함 설치도
		(신)죽진교	L=83.4m, B=10.5m	합성형라멘	2,014	"
		우곡교	L=37.6m, B=5.0m	합성형라멘	432	"
		우탑교	L=41.8m, B=6.0m	합성형라멘	577	"
		탑2교	L=41.8m, B=5.0m	합성형라멘	481	"
		은산교	L=40.0m, B=5.0m	합성형라멘	460	"
용궁	C	원당교	L=49.0m, B=9.0m	합성형라멘	1,014	VAT 포함 설치도
		읍부교	L=61.6m, B=5.0m	합성형라멘	708	"
		가야교	L=51.0m, B=5.0m	합성형라멘	587	"
		쌍수문1교	L=40.4m, B=5.0m	합성형라멘	465	"
		쌍수문2교	L=36.6m, B=5.0m	합성형라멘	421	"

라. 가설교량

지구	그룹	시설물명	제원	형식	추정금액 (백만원)	비고
용궁	D	원당교	L=49.5m, B=8.0m	가설교량	594	VAT 포함 설치도

※ 공법선정 대상의 규모, 사업기간 및 설치여부는 행정안전부 사전설계검토 등 발주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제안자는 변경사항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3. 참가자격 및 조건

- 가. 국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으며 신기술·특허공법 기술보유자(특허 통상실 시권자 및 신기술 사용협약자는 제외)로 권리 행사에 제약이 없으며, 해당 분야 전문건설업 또는 종합건설업 면허를 소지하고 있으며, 공법에 대한 소송 및 분쟁에 관련되지 않으며 우리 군과 기술사용협약에 동의하는 기술보유자(관련서류 기술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
- 나. 기술제안서 제출 공고일 기준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이어야 하고, 반드시 본 공사에 적용되는 규격의 시공이 가능한 자
- 다. 기술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제재기간 중이거나 영업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자 또는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자는 참가할 수 없습니다.
- 라. 배수펌프, 제진기의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전용실시권자 포함)는 제안그룹 A그룹, B그룹 중 1개 그룹만 제안 가능(기제안자 불가)
- 마. 교량의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전용실시권자 포함)는 제안분야 A그룹, B그룹, C그룹 중 1개 그룹만 제안이 가능하며, 제안분야 D그룹은 참여가 불가함.(기제안자 불가)
- 바. 가설교량의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전용실시권자 포함)는 제안분야 D그룹만 참여가 가능하며, 제안분야 A그룹, B그룹, C그룹 참여가 불가함.(제외)
- 사. 동일한 특정 공법을 복수의 업체가 제안에 참여할 경우 낮은 가격을 제안한 1개사만 유효한 제안으로 인정합니다.
- 아.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가 다수의 공법을 보유한 경우 1개 공법만 제안 가능합니다.

4. 선정기준 및 절차

- 가. 배점기준 : 정량적평가(20점) + 정성적평가(80점) = 종합평가(100점)
- 나. 세부평가기준
 - 1) 1차 평가(정량적평가)
 - 가) 평가대상 : 제안서 제출업체 전체

나) 평가부서 : 예천군 안전재난과

다) 평가방법 : 정량적평가(공사비, 경영상태, 품질인증, 지역가점)에 의하여 상위 5개 업체를 2차 평가 업체로 선정 (선정업체 별도 통보)

※ 참여업체가 5개 미만일 경우 모든 업체, 정량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 공사비 평가항목의 공사금액이 낮은 순으로 5개 업체를 2차평가 업체로 선정

2) 2차 평가(정성적평가)

가) 평가대상 : 그룹별 1차 평가에서 선정된 업체

나) 평가방법 : 예천군 공법선정위원회 심의

다. 선정기준

- 1) 정량적평가(20점)와 정성적평가(80점)의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점수를 받은 자의 공법을 1순위로 선정
- 2) 최고점수가 동일한 경우 정성적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정성적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한다.

5. 제안요청서 교부 및 제안서 제출

가. 공고기간 : 2022. 8. 18.(목) ~ 2022. 8. 22.(월)

나. 제안서 제출일시 : 2022. 8. 22.(월) 14:00까지

다. 제출방법 : 방문제출(팩스, 이메일, 우편 등 접수불가, 인감도장날인)

라. 제출장소 :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4층 안전재난과

다. 기술제안서 작성방법 및 제출 부수 : 본 사업의 [기술제안 요청서]에 의함
(1차평가지 기술제안서 제출부수는 원본 및 사본 각각 1부)

마. 증빙자료 : 등록 및 제출 시 자격조건 확인이 가능한 아래 증빙자료 제출

- 1) 참여공문
-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3) 사용인감신고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 등본 1부
- 4) 공법관련 증명서(권리행사 관련서류 포함)
- 5) 대리인 일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

6. 기타 유의사항

- 가. 기술제안서 작성지침 및 관련서식은 공고문 붙임자료에 첨부되어 있으니 다운받아서 사용하시고 반드시 기술제안서 작성안내서에 준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발주기관의 소유로 하고 업체 선정에 관계없이 일절 반환 및 공개하지 않습니다.
- 나. 기술제안서 작성지침에 제시된 양식 외 공법평가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첨부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다. 기술제안서의 부분에 제안사 식별정보(회사명, 공법명, 로고, 마크, 대표자명 등)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 공법선정위원회 심의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라. 1차 평가와 공법선정심의에서 결정된 사항 및 평가결과에 대하여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며 공법선정에 관하여 발생하는 이견은 우리 군의 해석에 따릅니다.
- 마. 최종 선정된 공법은 별도 통보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선정된 공법이라도 추후에 제출된 서류의 허위사실 기재 등 중요한 오류가 발견될 시에는 선정 취소하고 차 순위 공법으로 채택토록 합니다.
- 바. 최종 선정된 업체는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을 우리 군이 원하는 시기에 체결해야 하며 미 체결시에는 선정 취소하고 차 순위 업체가 선정될 수 있습니다.
- 사. 선정된 공법은 「용궁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오류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상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반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향후 우리군의 사업방침 및 관련 기관과의 협의 등에 따라 사업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아. 최초 공법 선정 공고에 따른 제안회사(참가등록업체)가 2개사 이하일 경우에는 재공고하며 재공고 시 제안회사(참가등록업체)가 2개사 이하일 경우 추가 재공고 없이 기존의 제안된 공법으로 심의합니다.
- 자. 최종 선정된 공법의 가격(직접공사비)은 설계내역서에 반영되며, 사전심의,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지방계약법 규정에 따른 입찰 등의 절차를 거쳐 감액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제안금액 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차. 설계 또는 계약 과정에서 제안사 귀책사유로 제안금액을 증액할 수 없으며 초과분에 대하여는 제안사가 이를 부담하고 공사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처 귀책사유, 관련법령 및 기준 변경, 물가변동 등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증가분은 제외합니다.
- 카.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부서와의 합의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향후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 타. 기술보유자가 제안한 모든 신기술·특허공법이 해당 공사에 적합하지 않다고 공법선정위원회에서 판단한 경우 재난안전신기술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파. 그룹별 제안 참여자가 2인 미만 경우에는 해당 그룹 제안을 재공고하며, 재공고 실시결과에도 2인 미만 경우에는 공법선정위원회에서 제안된 공법을 평가하여 해당 공사에 적용이 가능하고 일반적 공법과 비교하여 우수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공법으로 선정 할 수 있습니다.
- 하. 본 용역 참가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참가업체 부담으로 이에 대한 소요비용 청구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거. 공법선정위원회 평가결과는 위원회 개최 후 심의위원 명단 및 심의위원별 세부 평가점수를 공개하며, “심의 위원별 평가 결과”의 “심의 위원명”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7. 문의처

예천군 안전재난과 자연재난팀(☎ 054-650-6332)

붙임 기술제안요청서 1부. 끝.

※ 붙임 자료는 예천군청 홈페이지 ‘군보’ 게시판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예천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18일

예 천 군 수

1. 제정이유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예천군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적용범위(안 제1조, 제2조)

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지원범위(안 제3조)

- 의용소방대 임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의용소방대 워크숍, 소방기술경연대회 행사비 등 지원

다. 우수대원의 포상(안 제4조)

- 의용소방대 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의용소방대원에게 포상

3. 제정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참조 : 안전재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방문 제출

1) 전자우편(이메일) : gotkaz07@korea.kr

2) 주소 :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안전재난과

3) 팩스 : 054-650-615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안전재난과(전화 : 054-650-6151)

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예천군

홈페이지(www.ycg.kr) 『열린군정-군정소식-입법예고』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예천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예천군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예천군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지원범위)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2. 의용소방대 워크숍에 필요한 경비
3.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행사비
4. 그 밖에 군수가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4조(포상) 군수는 의용소방대 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의용소방대원에게 「예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천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18일

예 천 군 수

1. 개정이유

예천군여성회관 운영에 관한 규정을 구체화함으로써 여성회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여성회관 위탁운영 대상 범위 확대 및 내용 신설(안 제7조)

- 비영리여성단체 →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추가

나. 여성회관 사용제한 규정에서 기본권 침해 및 실정법 위반 용어 삭제 (안 제13조)

- 전염병 및 정신질환자 → 전염성 질환자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참조 : 주민복지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방문 제출

1) 전자우편(이메일) : hugepine0629@korea.kr

2) 주소 :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주민복지실

3) 팩스 : 054-650-6360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주민복지실(전화 : 054-650-621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예천군 홈페이지(www.ycg.kr) 『열린군정-군정소식-입법예고』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예천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비영리여성단체”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전염성 질환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위탁운영)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위탁 운영 · 관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이 동일한 <u>비영리여 성단체</u> 에 위탁할 수 있다. <u><신 설></u>	제7조(위탁운영) ① ----- ----- ----- ----- <u>비영리법 인 또는 비영리단체</u> ---. ② <u>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 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u>
제13조(사용제한 및 허가취소)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제한 또는 사용허 가를 취소할 수 있다. <u>1. 전염병 및 정신질환자</u> 2. · 3. (생 략)	제13조(사용제한 및 허가취소) -- ----- ----- -----. <u>1. 전염성 질환자</u> 2. · 3. (현행과 같음)